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8

발의연월일: 2020. 6. 5.

발 의 자:윤후덕·김철민·김경협

윤관석 • 박 정 • 백혜련

김정호 · 서삼석 · 임종성

전혜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의 "갱신청구권"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 또한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%로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3 및 제7조).

법률 제 호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갱신청구권)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2.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
- 3.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
- 4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
- 5.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
- 6.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
- 7.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

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

- 8.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 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고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 사할 수 있다.
-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.

제7조 단서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"을 "연 5%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갱신청구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- 6.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 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 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
- 7.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 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8.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 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 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 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고 최초의 임대차기 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.
-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 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차임 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 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.

제7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 당 제7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 ---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 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, 공 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

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. 다만, 증액의 경우 에는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</u> 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 한다.

<u>연 5%를</u>